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나21097 판결 [대여금 및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나21097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14 선고 2020가단11068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렉스

담당변호사 최종민

피고, 항소인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우기

변론 종결 2022. 10. 26.

판결 선고 2023. 1. 18.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14. 선고 2020가단110688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 B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6.부터 2019. 12. 25.까지 연 11.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56%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20. 1. 23. 접수 제33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제12행의 '제3항'을 '제3호'로 고쳐 쓰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들은, 채권양수인인 원고가 D이 G에게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지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D에 대하여 양도대금을 지급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채무자인 G가 위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B는 위 대출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피고 B에게 채권양도인인 D에 대하여 대출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항변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D이 G 계좌에 대출금을 입금한 이상, 원고에게 그 이후 대출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까지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피고 B에게 위와 같은 항변사유가 있음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들은, 피고 B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대하여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6조에서 'G는 이 계약에 의하여 대상자산 일체가 원고에게 양도되는 것을 승낙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서면에 의한 승낙의 의사에 갈음하기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는 G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경아

판사박남천

판사박태안

별지